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8, 최민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2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변안의 건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민희의원)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 개발'을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초기 수요자로서 시장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초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는 성과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면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구매나 용역 발주를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는 공공수요 창출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안 제18조 제3항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국내기업이 생산·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해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이미 민간에서 수요가 충분히 형성된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책임 면제 제도를 시행할 실익이 적으므로, 안 제18조 제3항과 제4항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적용하도록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